

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(제7조 관련)

1.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

가. 서류검사 및 역학조사

- 1)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여부 확인
- 2) 상대국 정부의 불합격 사유 확인

가) 국내질병 발생으로 반송된 경우: 가축방역상 안전·보관여부 확인

- ① 수출검역증명서와 선적서류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가 일치할 경우: 현물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개방
- ② 수출검역증명서와 선적서류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가 불일치할 경우
 -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"보관상태 확인증명서" 첨부시: 개방
 -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"보관상태 확인증명서" 미첨부시: 폐기

나) 유통기한 경과·변질부패 등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: 폐기

나. 입항지 컨테이너 검사

- 1) 수출검역증명서와 현물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와 일치한 경우: 개방
- 2) 수출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없거나 불일치한 경우: 현물 확인 및 서류검사·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

2. 의뢰검역물의 검역방법

가. 서류검사 및 역학조사

- 1)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여부 확인
- 2) 상대국 정부의 불합격 사유 확인

가) 국내질병 발생으로 반송된 경우: 개방

나) 유통기한 경과·변질부패 등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: 폐기

나. 입항지 컨테이너 검사

- 1) 수출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와 일치한 경우: 개방
- 2) 수출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없거나 불일치한 경우: 현물 확인 및 서류검사·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

3. 개·고양이 검역 방법

가. 수출검역증명서를 제출한 경우

- 1)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"보관상태 확인 증명서" 등 첨부 시 :
역학조사 및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방
- 2)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"보관상태 확인 증명서" 등 미첨부시:
 - 가)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거나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 결과 조건 (0.5IU/ml 이상)이 충족되는 경우 : 역학조사 및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방
 - 나)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지 않거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조건(0.5IU/ml 이상)이 미충족되는 경우 : 반송 또는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여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거나 계류장 입고하여 접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(단, 임상검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함)
 - (기준치 충족) 즉시 개방
 - (기준치 미충족) 추가 예방접종 후 당일 개방

나. 수출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- 1)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"보관상태 확인 증명서" 등 첨부시 : 별표 9, 별표 10에 의한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거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(0.5IU/ml 이상) 조건충족을 확인한 후 개방
- 2)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"보관상태 확인 증명서" 등 미 첨부시 :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